

#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82조, 제82조의 2에 의하여 학교법인 건양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의 기본적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의 범위)** 법인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부서의 설치 및 폐지)**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정관 또는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한다.

## 제2장 이사회

**제4조(이사의 구성 및 운영)** 이사의 구성 및 운영은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.

**제5조(이사장)**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상임이사)**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조직)** 이사장 밑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와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 법인사업본부를 둔다.

**제8조(위원회)** ① 이사장은 법인 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3장 법인사무국

**제9조(법인사무국)**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, 법인사무국에는 국장·부국장을 둘 수 있고, 국장·부국장은 차장이상으로 보한다.

② 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부국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법인사무국 조직)** ① 법인사무국에는 행정팀, 기획팀, 법무실과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(실장)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.

② 각 팀장 중에서 선임팀장을 법인사무국 총괄팀장 또는 차장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팀장은 겸직할 수 있다.

**제11조(행정팀)**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이사장의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
2. 이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
3.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
4.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업무
5.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
6. 인사평가에 관한 업무
7.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
8. 상·벌에 관한 업무
9. 급여 정책에 관한 업무
10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1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**제12조(기획팀)**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법인 및 산하기관의 직제관리에 관한 업무
2. 정관 및 제 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
4. 법인 및 산하기관의 MBO에 관한 업무
5. 법인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업무
6. 각종 인·허가에 관한 업무
7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**제13조(법무실)** 법무실은 법인 및 산하기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법률 분쟁(분쟁, 조정, 소송 등)에 관한 업무
2. 인사·노무 업무 중 법률에 관한 업무

3. 유·무형 재산관리 업무 중 법률에 관한 업무
4. 교육 및 위원회 업무 중 법률에 관한 업무
5.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## 제4장 법인사업본부

**제14조(법인사업본부)** ① 법인사업의 사무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사업본부를 두고, 본부장은 차장이상으로 보한다. 단,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법인사업본부에는 총무부와 사업부를 두며, 각 부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.

③ 본부장 및 각 부장은 법인사무국 직원 중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.

**제15조(총무부)** 총무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수익사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업무
2.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
3. 시설임대에 관한 업무
4. 수익 분석에 관한 업무
5. 자회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**제16조(사업부)** 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사업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
2. 소속직원 복무 및 출근부 관리에 관한 업무
3. 사업부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자체 시설물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업무
5. 자체 보안 및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**제17조(사업체 신설)** 사업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.

## 제5장 보 칙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사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. 법인 조직도

